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95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유용원·이헌승·조승화

김소희 · 김미애 · 임종득

신동욱 · 최형두 · 김재섭

배준영 · 조지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 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 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이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외국인등의 토지취득 금지 또는 제한) ① 외국인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외국인등이 상속·유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외국인 토

지취득 제한구역 내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
	역"이란 통제보호구역 및 제
	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을 위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외국인등(이하 "외국인등"
	이라 한다)의 토지취득을 특
	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u><신 설></u>	제9조의2(외국인등의 토지취득
	금지 또는 제한) ① 외국인등
	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내
	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유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약 외의 원인으로 외국인 토지

제2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설></u>

③ ~ ⑧ (생 략) <신 설> 취득 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 생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외 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내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2)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